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19년 12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3.2% 증가(전월대비 1.4%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함.
  - 전월대비로는 서비스업에서 감소하였으나,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1.4%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등이 늘어 전년동월 대비 4.8% 증가함(전월대비 3.8%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함(전월대비 0.1% 감소).

#### ◆ 2019년 1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4.6% 증가, 설비투자는 11.1%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4.4%)는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12.6%), 화장품 등 비내구재(4.8%)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함(전월대비 0.3% 증가).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9.0%)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7.0%) 투자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함(전월대비 10.9%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하였음.

◆ 2019년 1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상승

◆ 2020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5%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 동월대비 2.1% 상승)

- 2020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9(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1.5% 상승(전월대비 0.6%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교통(6.2%), 식료품·비주류음료(1.8%), 주택·수도·전기·연료(1.4%), 음식·숙박(1.2%), 보건(1.8%), 기타 상품·서비스(2.0%), 가정용품·가사서비스(1.0%), 의류·신발(0.6%), 주류·담배(0.9%), 오락·문화(0.2%)는 상승, 교육(-0.9%), 통신(-2.2%)은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1.8%)과 식품 이외(2.4%)가 모두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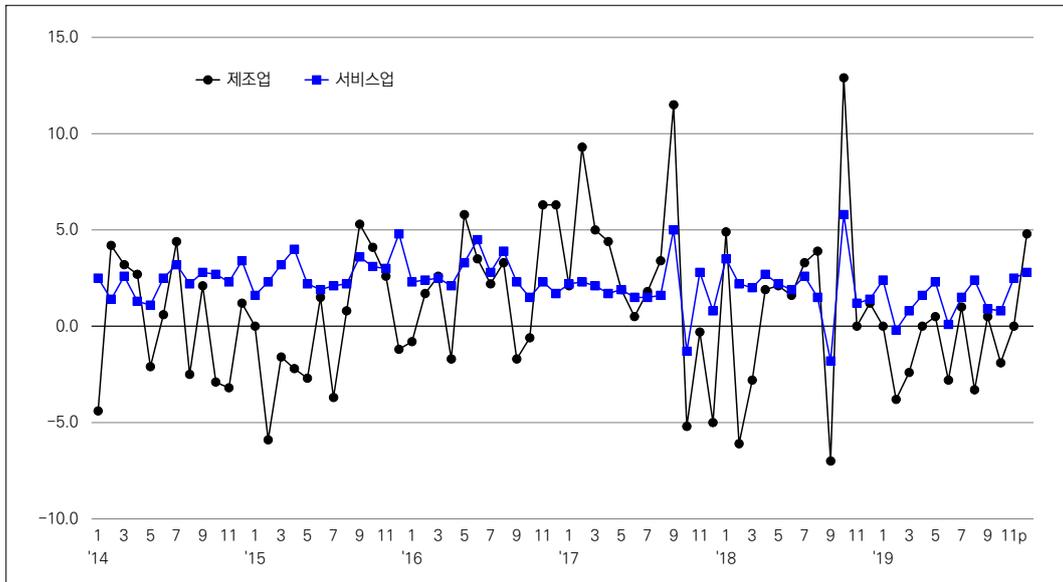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안은 전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7	2018	2019p	2018				2019				2018	2019	
					1/4	2/4	3/4	4/4	1/4	2/4	3/4	4/4p		12월	11월p
생산	전산업	2.5	1.4	0.4	1.1	1.8	-0.1	2.6	-0.6	0.4	0.5	1.4	0.4	1.2( 0.4)	3.2( 1.4)
	광공업	2.4	1.3	-0.7	-1.1	2.0	0.1	4.3	-2.1	-0.7	-0.7	0.6	0.7	-0.2(-0.5)	4.2( 3.5)
	제조업	2.2	1.2	-0.7	-1.4	1.9	-0.1	4.6	-2.1	-0.8	-0.6	0.8	1.2	0.0(-0.7)	4.8( 3.8)
	건설업	10.5	-5.3	-6.7	0.8	-3.5	-9.7	-7.9	-9.5	-6.4	-7.9	-3.4	-9.3	-4.8(-2.1)	-2.1( 4.1)
	서비스업	1.9	2.1	1.5	2.5	2.2	0.8	2.7	1.1	1.4	1.6	2.1	1.4	2.5( 1.4)	2.8(-0.1)
소비	소비재 판매	1.9	4.3	2.4	5.3	5.0	3.8	3.0	1.7	2.0	2.3	3.4	3.1	3.6( 3.1)	4.6( 0.3)
투자	설비투자	14.5	-3.5	-7.6	10.6	-4.8	-11.8	-6.6	-19.6	-8.7	-3.7	2.7	-13.6	-0.1( 0.8)	11.1(10.9)
물가		1.9	1.5	0.4	1.1	1.5	1.6	1.8	0.5	0.7	0.0	0.3	0.8	0.7( 0.2)	1.5( 0.6)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19년 1월, 2019년 12월, 2020년 1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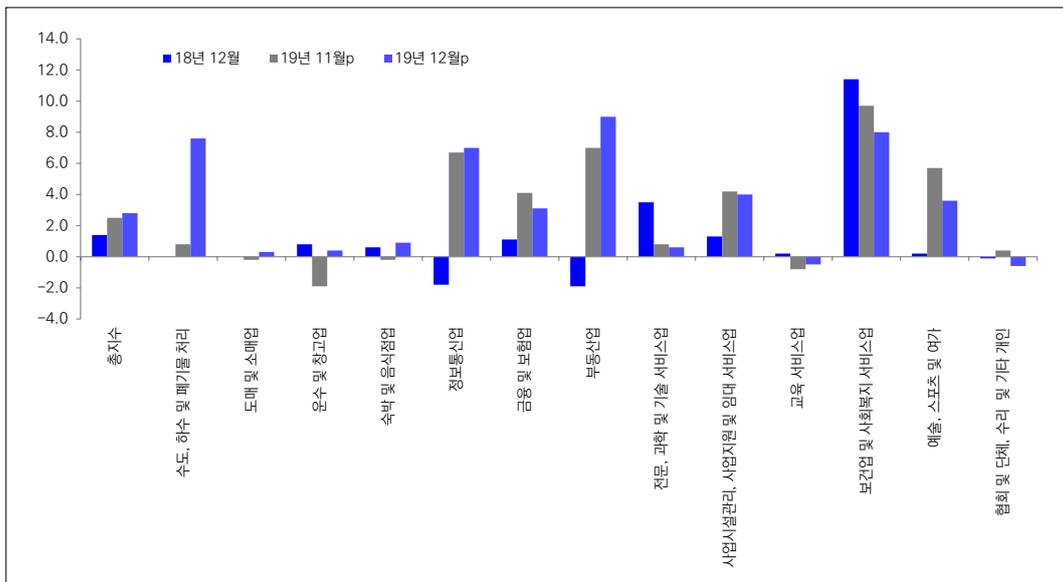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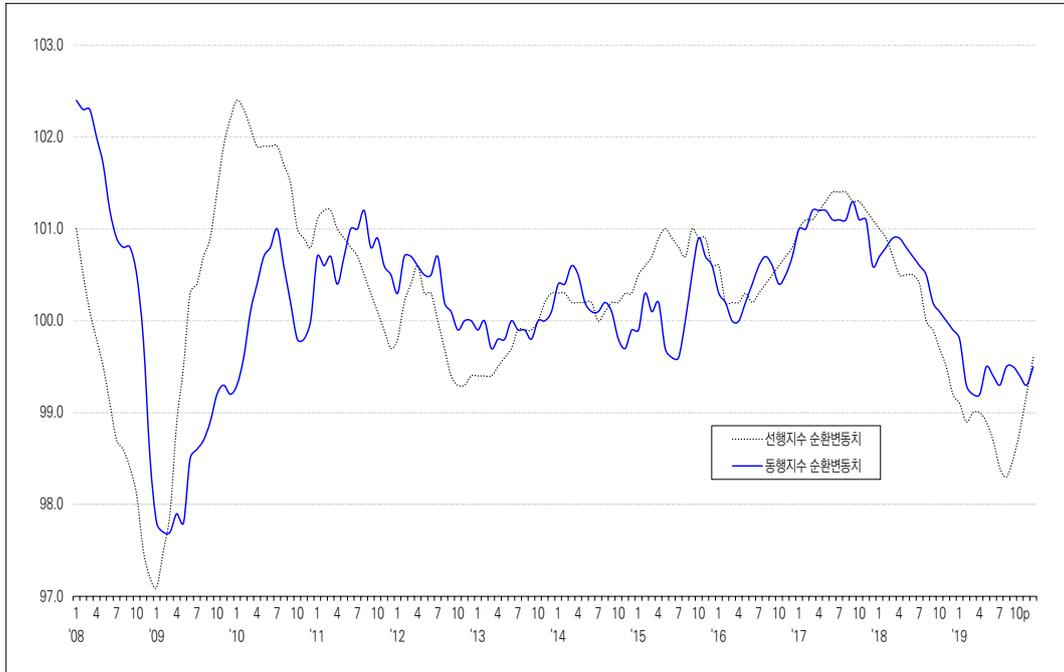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연구원)

● 고용 동향

◆ 1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568천 명 증가, 고용률 0.8%p 상승

- 2020년 1월 경제활동인구(27,952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497천 명(1.8%) 증가함.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68천 명 증가한 26,800천 명으로,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44천 명 증가하고, 남성 취업자는 224천 명 증가함.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1천 명 감소한 1,153천 명으로, 실업률은 4.1%를 기록함. 남성 실업자(626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67천 명 감소, 여성 실업자(526천 명)는 4천 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남성이 3.9%(0.5%p 하락), 여성은 4.4%(0.1%p 하락)임.
- 2020년 1월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한 62.6%임.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9%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고, 남성(72.6%)은 전년동월과 동일함.
- 2020년 1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한 60.0%임.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한 69.7%,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한 50.6%를 기록함.
  - 15~64세 고용률은 66.7%(0.8%p 상승)로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6.7%p 높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과 비교해 0.4%p 상승한 75.4%이고, 여성은 0.9%p 상승한 57.7%임.
- 2020년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51천 명 감소한 16,713천 명임.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과 ‘수강’은 전년동월대비 125천 명 감소하였고, ‘육아’와 ‘가사’는 217천 명 감소함. ‘취업준비’ 상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4천 명 감소하고, ‘쉬었음’은 195천 명 증가함(그림 2 오른쪽 참조).

〈표 1〉 주요 고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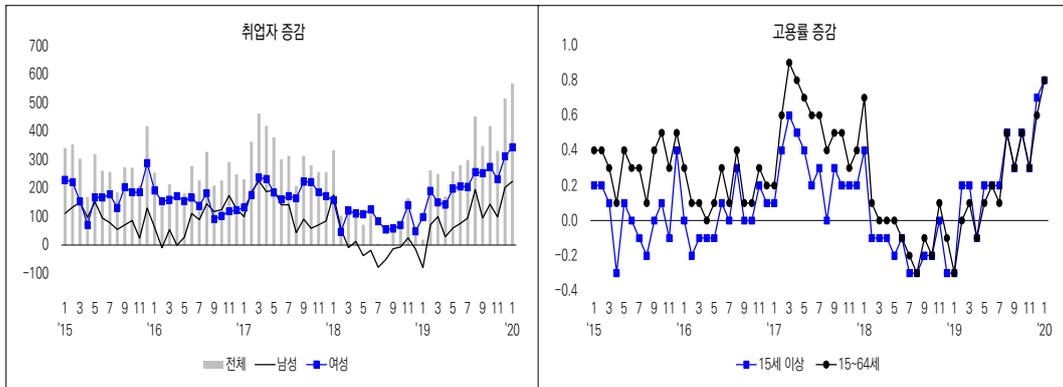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7	2018	2019	2018	2019	2019		2020
					1월	1월	11월	12월	1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3,931	44,182	44,504	44,073	44,319	44,625	44,661	44,665
	(증가수)	(325)	(252)	(322)	(282)	(246)	(341)	(345)	(347)
	경제활동인구	27,748	27,895	28,186	27,232	27,455	28,380	28,095	27,952
	(증가수)	(329)	(148)	(291)	(346)	(223)	(288)	(513)	(497)
	취업자	26,725	26,822	27,123	26,213	26,232	27,515	27,154	26,800
	(증가율)	( 1.2)	( 0.4)	( 1.1)	( 1.3)	( 0.1)	( 1.2)	( 1.9)	( 2.2)
	(증가수)	(316)	( 97)	(301)	(334)	( 19)	(331)	(516)	(568)
	(남성)	(127)	( 4)	( 91)	(177)	(-79)	( 99)	(203)	(224)
	(여성)	(189)	( 94)	(210)	(158)	( 98)	(232)	(312)	(344)
	경제활동참가율	63.2	63.1	63.3	61.8	61.9	63.6	62.9	62.6
	(남성)	(74.1)	(73.7)	(73.5)	(72.8)	(72.6)	(73.5)	(73.0)	(72.6)
	(여성)	(52.7)	(52.9)	(53.5)	(51.1)	(51.7)	(54.0)	(53.1)	(52.9)
	고용률	60.8	60.7	60.9	59.5	59.2	61.7	60.8	60.0
	(남성)	(71.2)	(70.8)	(70.7)	(70.1)	(69.4)	(71.1)	(70.6)	(69.7)
(여성)	(50.8)	(50.9)	(51.6)	(49.2)	(49.4)	(52.5)	(51.3)	(50.6)	
실업자	1,023	1,073	1,063	1,020	1,224	866	942	1,153	
실업률	3.7	3.8	3.8	3.7	4.5	3.1	3.4	4.1	
(남성)	( 3.8)	( 3.9)	( 3.9)	( 3.7)	( 4.4)	( 3.3)	( 3.3)	( 3.9)	
(여성)	( 3.5)	( 3.7)	( 3.6)	( 3.8)	( 4.5)	( 2.7)	( 3.4)	( 4.4)	
비경제활동인구	16,183	16,287	16,318	16,840	16,864	16,245	16,566	16,713	
(증가수)	( -5)	(104)	( 31)	(-64)	( 23)	(53)	(-168)	(-151)	
15~64세	생산가능인구	36,860	36,796	36,791	36,830	36,766	36,759	36,757	36,723
	(증가수)	( 21)	(-63)	( -5)	(-35)	(-63)	(-23)	(-31)	(-43)
	참가율	69.2	69.3	69.5	68.6	68.7	69.6	69.3	69.1
	(남성)	(79.3)	(79.1)	(78.8)	(78.6)	(78.3)	(78.8)	(78.6)	(78.2)
	(여성)	(59.0)	(59.4)	(60.0)	(58.5)	(58.9)	(60.2)	(59.9)	(59.8)
	고용률	66.6	66.6	66.8	66.2	65.9	67.4	67.1	66.7
	(남성)	(76.3)	(75.9)	(75.7)	(75.8)	(75.0)	(76.1)	(76.0)	(75.4)
(여성)	(56.9)	(57.2)	(57.8)	(56.4)	(56.8)	(58.4)	(58.0)	(57.7)	
취업자	24,559	24,511	24,585	24,371	24,246	24,760	24,663	24,487	
(증가수)	(218)	(-48)	( 74)	(224)	(-125)	( 89)	(208)	(241)	

주 :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20. 2), 『2020년 1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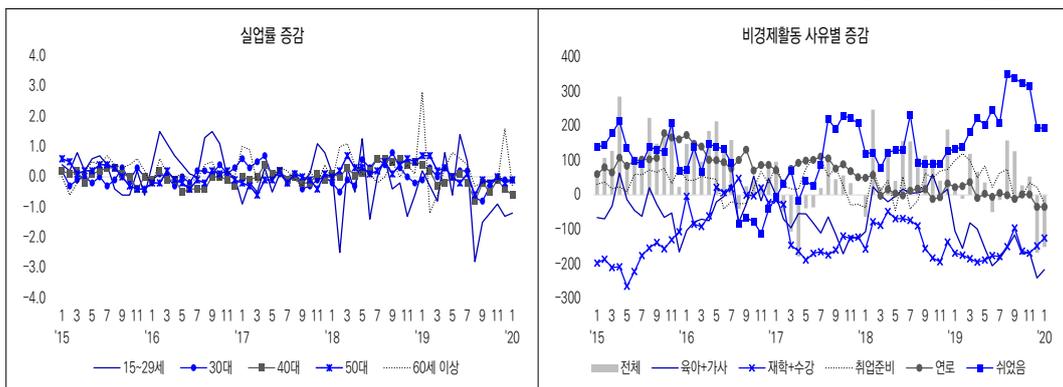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40대 연령층 취업자 감소폭 축소, 60대 연령층 취업자 증가폭 확대

○ 2020년 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20대(63천 명, 1.7%), 30대(18천 명, 0.3%), 50대(62천 명, 1.0%), 60세 이상(507천 명, 12.7%)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40대(-84천 명, -1.3%) 연령층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대 연령층 취업자는 증가폭이 소폭 축소(63천 명, 12월 64천 명)되는데, 20대 초반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전환(-4천 명, 12월 2천 명)되고, 20대 후반 연령층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67천 명, 12월 62천 명)됨.

- 30대 초반 연령층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57천 명, 12월 20천 명)되고, 30대 후반 연령층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39천 명, 12월 -18천 명)됨. 30대 초반 미혼 여성 취업자는 증가폭이 소폭 감소(34천 명, 12월 37천 명)된 반면 기혼 여성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22천 명, 12월 -19천 명)됨. 30대 후반은 미혼, 기혼 여성 취업자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17천 명(12월 17천 명) 증가, 3천 명(12월 11천 명) 감소하여 기혼 여성의 고용 감소 확대가 관찰됨.
- 40대 연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4천 명 감소하여 감소세가 큰 폭으로 축소(12월 -128천 명)됨. 40대 초반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12천 명, 12월 3천 명)되었고, 후반 연령층은 감소가 소폭 축소(-96천 명, 12월 -131천 명)됨.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천 명)

	2017	2018	2019	2018	2019	2019		2020
				1월	1월	11월	12월	1월
전 체	26,725 (316)	26,822 ( 97)	27,123 (301)	26,213 (334)	26,232 ( 19)	27,515 (331)	27,154 (516)	26,800 (568)
15~19세	247 ( 3)	205 (-42)	198 ( -7)	233 (-35)	202 (-31)	176 ( -7)	188 ( 5)	205 ( 3)
20~29세	3,660 ( -3)	3,699 ( 39)	3,747 ( 48)	3,655 ( 66)	3,689 ( 34)	3,819 ( 70)	3,765 ( 64)	3,751 ( 63)
20~24세	1,368 (-34)	1,292 (-77)	1,272 (-20)	1,330 (-37)	1,259 (-71)	1,301 ( 18)	1,254 ( 2)	1,255 ( -4)
25~29세	2,292 ( 30)	2,408 (116)	2,475 ( 68)	2,324 (103)	2,430 (105)	2,518 ( 52)	2,511 ( 62)	2,496 ( 67)
30~39세	5,643 (-29)	5,582 (-61)	5,529 (-53)	5,626 (-14)	5,501 (-126)	5,533 (-26)	5,551 ( 2)	5,518 ( 18)
30~34세	2,593 (-139)	2,512 (-81)	2,493 (-19)	2,543 (-104)	2,464 (-79)	2,505 ( 11)	2,511 ( 20)	2,521 ( 57)
35~39세	3,050 (110)	3,070 ( 20)	3,037 (-34)	3,083 ( 90)	3,037 (-47)	3,028 (-36)	3,039 (-18)	2,997 (-39)
40~49세	6,783 (-50)	6,666 (-117)	6,504 (-162)	6,705 (-52)	6,539 (-166)	6,484 (-179)	6,483 (-128)	6,455 (-84)
50~59세	6,302 (152)	6,346 ( 44)	6,444 ( 98)	6,267 (147)	6,311 ( 44)	6,497 ( 65)	6,463 ( 94)	6,373 ( 62)
60세 이상	4,090 (242)	4,324 (234)	4,701 (377)	3,727 (223)	3,990 (264)	5,006 (409)	4,705 (479)	4,497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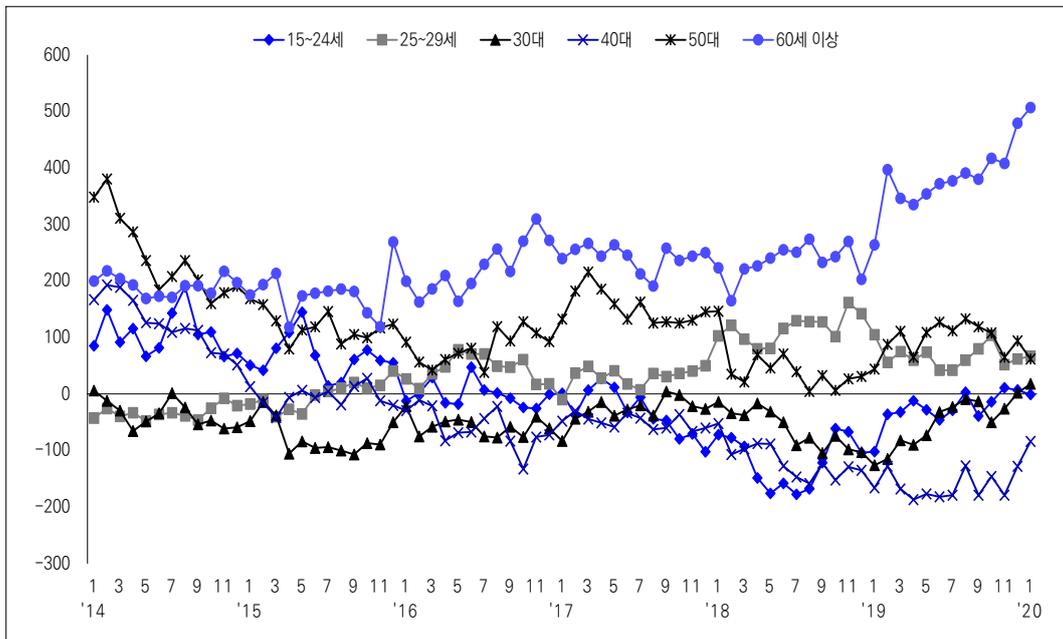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통계청(2020. 2), 『2020년 1월 고용동향』.

- 50대 연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2천 명 증가(50대 초반 75천 명, 50대 후반 -13천 명)하여 증가폭이 축소(12월 94천 명)되고, 60세 이상 연령층은 취업자가 50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12월 479천 명)됨.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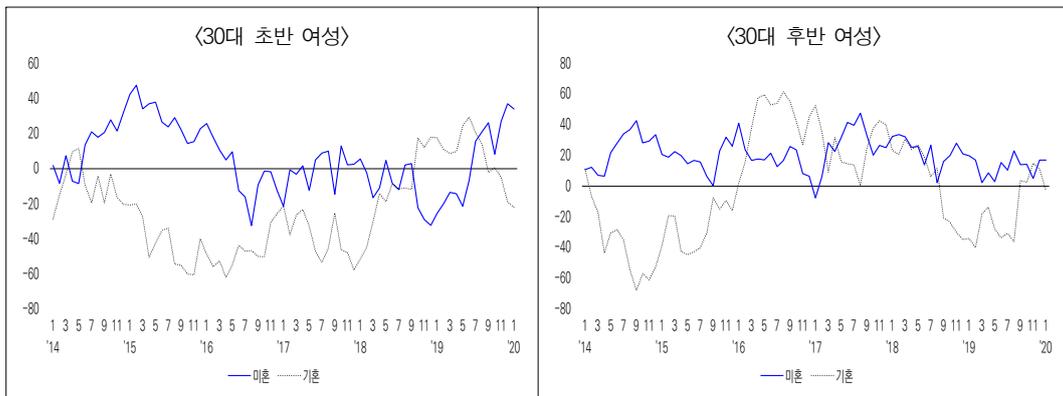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30대 여성 혼인여부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상용직 증가폭 확대, 임시직은 감소 전환, 일용직은 감소폭 축소

- 2020년 1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20,376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570천 명(2.9%)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6,423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2천 명(0.0%) 감소함.
- 1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증가폭이 확대됨(전년동월대비 664천 명 증가, 12월 641천 명). 일용직은 감소폭이 축소(-62천 명, 12월 -131천 명)되고, 임시직은 32천 명 감소하여 감소전환(12월 34천 명)됨.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53천 명 증가(12월 169천 명)하여 증가세를 유지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4천 명 감소(12월 -180천 명)하여 감소세가 축소되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가전환(9천 명, 12월 -18천 명)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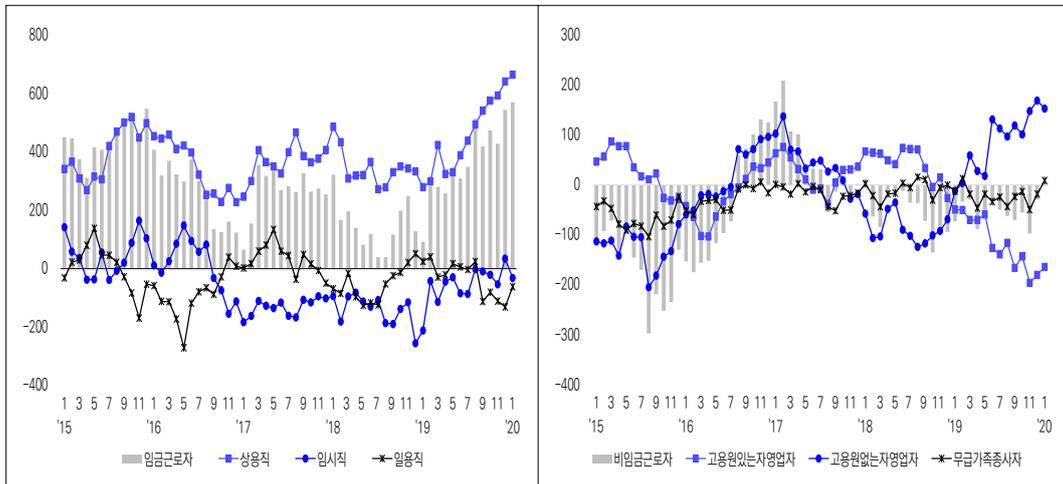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2017	2018	2019	2018	2019	2019		2020
				1월	1월	11월	12월	1월
전 체	26,725 (316)	26,822 ( 97)	27,123 (301)	26,213 (334)	26,232 ( 19)	27,515 (331)	27,154 (516)	26,800 (568)
비임금근로자	6,791 ( 51)	6,739 (-52)	6,683 (-56)	6,498 ( 12)	6,425 (-73)	6,668 (-97)	6,464 (-29)	6,423 (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08 ( 24)	1,651 ( 43)	1,538 (-114)	1,663 ( 67)	1,614 (-49)	1,462 (-196)	1,436 (-180)	1,450 (-16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4 ( 44)	3,987 (-87)	4,068 ( 81)	3,871 (-58)	3,858 (-12)	4,120 (148)	4,049 (169)	4,011 (153)
무급가족종사자	1,110 (-17)	1,101 ( -9)	1,077 (-24)	965 ( 2)	953 (-12)	1,086 (-49)	979 (-18)	962 ( 9)
임금근로자	19,934 (265)	20,084 (150)	20,440 (357)	19,715 (322)	19,807 ( 92)	20,847 (428)	20,690 (544)	20,376 (570)
상용근로자	13,428 (366)	13,772 (345)	14,216 (444)	13,643 (485)	13,923 (279)	14,490 (593)	14,575 (641)	14,586 (664)
임시근로자	4,992 (-132)	4,851 (-141)	4,795 (-56)	4,667 (-94)	4,455 (-212)	4,900 (-54)	4,706 ( 34)	4,423 (-32)
일용근로자	1,514 ( 31)	1,460 (-54)	1,429 (-31)	1,404 (-69)	1,429 ( 25)	1,457 (-111)	1,409 (-131)	1,367 (-62)
1~17시간	1,362 (95)	1,520 (158)	1,821 (301)	1,382 ( 70)	1,517 (135)	1,898 (386)	1,902 (357)	1,781 (264)
18~35시간	3,051 (-169)	3,690 (639)	3,581 (-109)	2,754 (114)	3,039 (285)	3,350 (250)	3,288 (126)	3,344 (306)
36시간 이상	21,930 (421)	21,209 (-720)	21,314 (105)	21,439 (135)	21,101 (-338)	21,982 (-289)	21,657 ( 41)	21,128 ( 27)
주당 평균 근로시간	42.8	41.5	40.7	42.0	41.1	40.8	40.6	40.4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20. 2), 『2020년 1월 고용동향』.

[그림 5]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운수업,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폭 확대, 정보통신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보통신업은 감소폭이 확대됨.

– 2020년 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9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86천 명), 사업시설,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5천 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함. 운수 및 창고업(92천 명, 12월 69천 명), 농림어업(79천 명, 12월 47천 명)은 증가폭을 확대함.

– 반면, 도매 및 소매업(-94천 명)과 금융 및 보험업(-32천 명)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보통신업(-35천 명, 12월 -27천 명)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강화되고 있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천 명, 12월 -18천 명)과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19천 명, 12월 -25천 명)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됨.

○ 단시간 근로자(1~36시간 미만)가 1월 569천 명 증가한 가운데, 1~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232천 명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그리고 농림어업에서 꾸준히 증가함.

– 초단시간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2천 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1천 명), 농림어업(49천 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15천 명) 위주로 증가함.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2017	2018	2019	2018	2019	2019		2020
				1월	1월	11월	12월	1월
전 산업	26,725 (316)	26,822 ( 97)	27,123 (301)	26,213 (334)	26,232 ( 19)	27,515 (331)	27,154 (516)	26,800 (568)
농림어업	1,279 ( 6)	1,340 ( 62)	1,395 ( 55)	986 ( 94)	1,093 (107)	1,460 ( 22)	1,217 ( 47)	1,172 ( 79)
광업	23 ( 4)	19 (-4)	15 (-4)	21 ( 1)	16 (-5)	15 (-1)	14 (-2)	14 (-2)
제조업	4,566 (-18)	4,510 (-56)	4,429 (-81)	4,609 (106)	4,439 (-170)	4,464 (-26)	4,476 (-15)	4,447 ( 8)
전기·가스·증기	72 (-4)	70 (-2)	68 (-2)	72 (-7)	64 (-7)	65 ( 1)	69 ( 5)	74 ( 10)
수도·원료재생	115 ( 2)	127 ( 12)	135 ( 8)	115 ( 5)	134 ( 19)	142 ( 10)	147 ( 17)	144 ( 10)
건설업	1,988 (119)	2,034 ( 47)	2,020 (-15)	1,988 ( 99)	1,969 (-19)	2,047 (-70)	2,047 (-27)	1,974 ( 5)
도매 및 소매업	3,795 ( 41)	3,723 (-72)	3,663 (-60)	3,771 (-32)	3,703 (-67)	3,633 (-88)	3,617 (-94)	3,609 (-94)
운수 및 창고업	1,405 (-22)	1,407 ( 2)	1,431 ( 25)	1,426 ( 11)	1,417 (-9)	1,478 ( 58)	1,492 ( 69)	1,509 ( 92)
숙박 및 음식점업	2,288 (-3)	2,243 (-45)	2,303 ( 61)	2,286 (-31)	2,246 (-40)	2,306 ( 82)	2,340 (100)	2,332 ( 86)
정보통신업	783 (-1)	837 ( 55)	861 ( 23)	789 ( 9)	883 ( 94)	856 (-11)	853 (-27)	849 (-35)
금융 및 보험업	794 (-9)	840 ( 46)	800 (-40)	813 ( 14)	812 (-1)	808 (-33)	800 (-30)	781 (-32)
부동산업	540 ( 57)	528 (-12)	556 ( 28)	512 ( 4)	520 ( 8)	569 ( 20)	559 ( 25)	553 ( 3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092 (-9)	1,096 ( 4)	1,157 ( 60)	1,097 (-9)	1,135 ( 39)	1,186 ( 77)	1,175 ( 78)	1,185 ( 49)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1,374 (-17)	1,311 (-63)	1,312 ( 1)	1,340 (-12)	1,264 (-76)	1,325 ( 35)	1,341 ( 63)	1,328 ( 6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058 ( 55)	1,110 ( 52)	1,076 (-33)	991 ( 62)	972 (-19)	1,120 (-36)	1,044 (-18)	963 (-10)
교육서비스업	1,907 ( 45)	1,847 (-60)	1,883 ( 37)	1,826 (-67)	1,837 ( 12)	1,892 ( 34)	1,876 ( 23)	1,844 ( 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921 ( 61)	2,046 (125)	2,206 (160)	1,826 ( 40)	2,004 (179)	2,289 (135)	2,236 (178)	2,194 (189)
예술·스포츠·여가	428 ( 22)	445 ( 16)	495 ( 50)	461 ( 47)	438 (-23)	533 ( 82)	533 ( 88)	507 ( 69)
협회·단체·수리·기타	1,222 (-3)	1,236 ( 14)	1,233 (-3)	1,223 ( 20)	1,234 ( 10)	1,210 (-31)	1,208 (-25)	1,215 (-19)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64 (-5)	48 (-17)	75 ( 27)	54 (-13)	43 (-11)	104 ( 63)	97 ( 52)	93 ( 50)
국제 및 외국기관	12 (-5)	7 (-5)	12 ( 5)	8 (-4)	8 (-1)	15 ( 8)	15 ( 8)	15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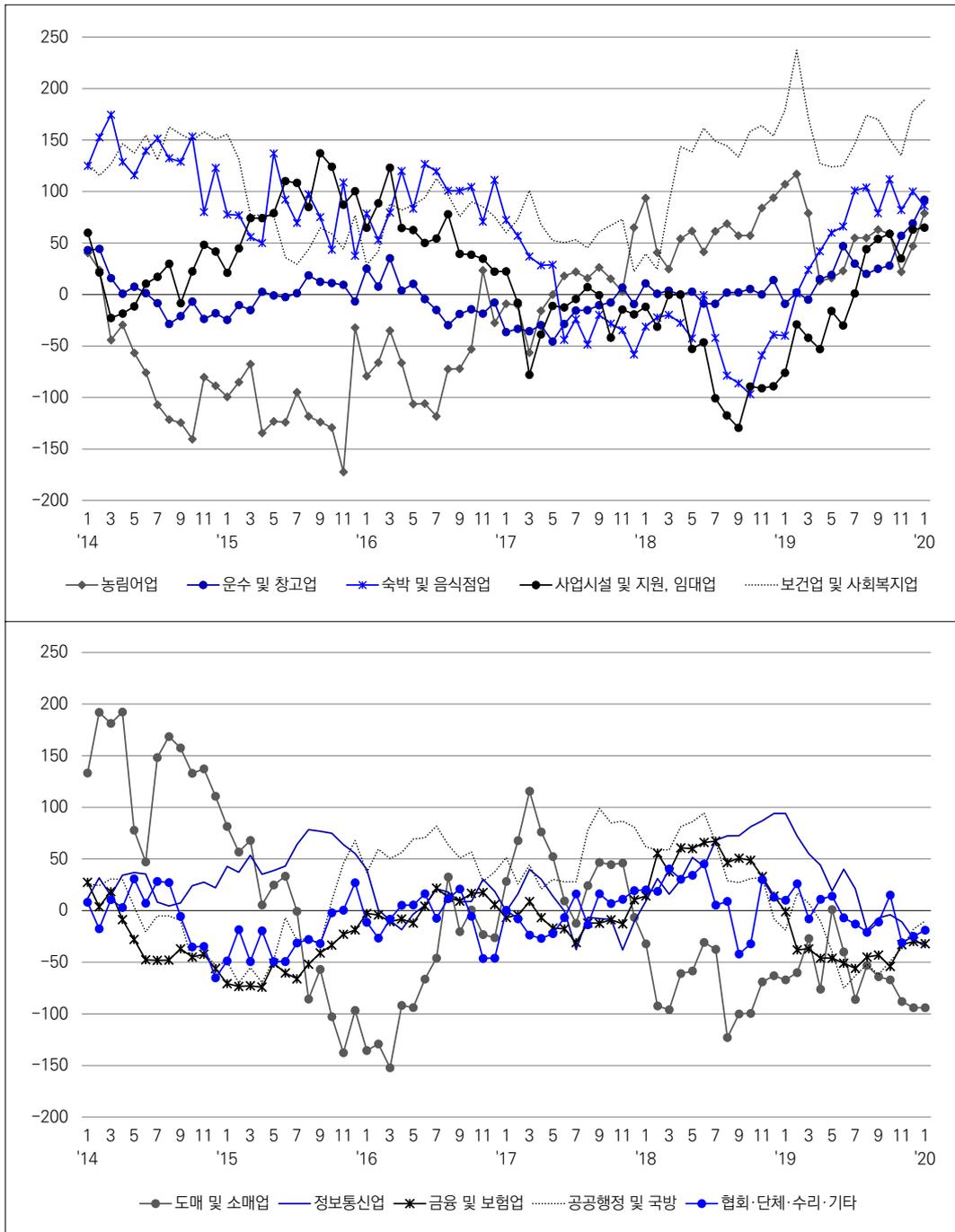
주: 1)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2) 10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통계청(2020. 2), 『2020년 1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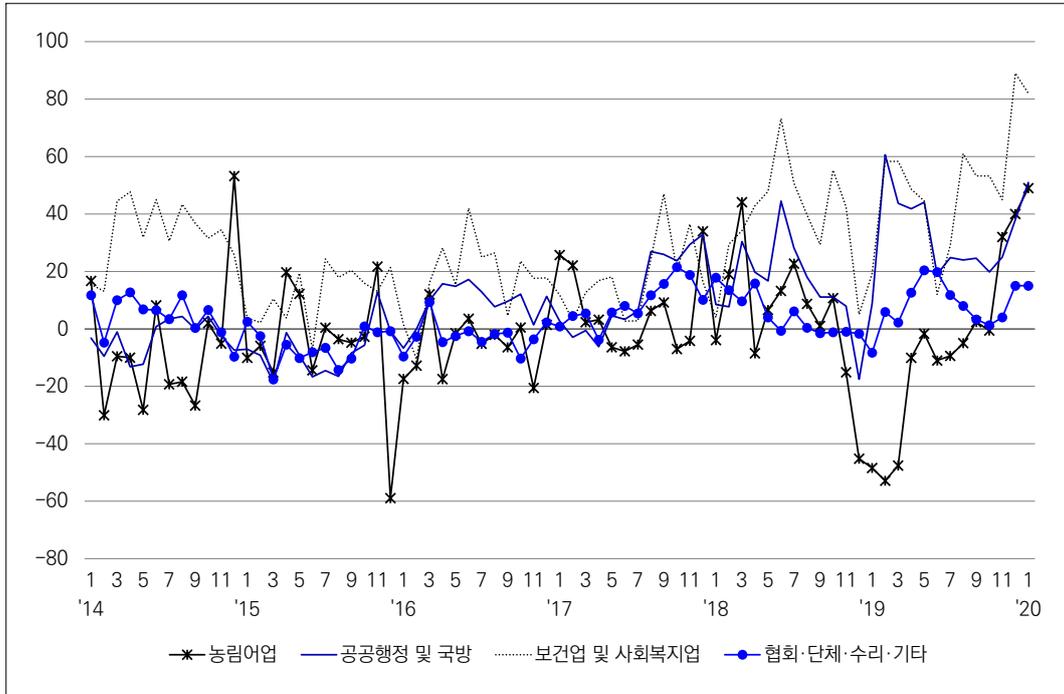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산업별 초단시간 근로자 증감 추이(일시휴직 제외)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9년 1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2019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20천 원(3.8% ↑)임.
  - 2019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40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하였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55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3%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는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나 특별급여의 감소폭이 크게 둔화한 영향으로 임금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6~7%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9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폭은 3.6%임.

◆ 2019년 1~11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3.5%, 3.2%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둔화

- 2019년 1~11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454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3.5%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3,662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3.2% 상승에 그침.
  -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512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6.2% 상승함.

〈표 1〉 임금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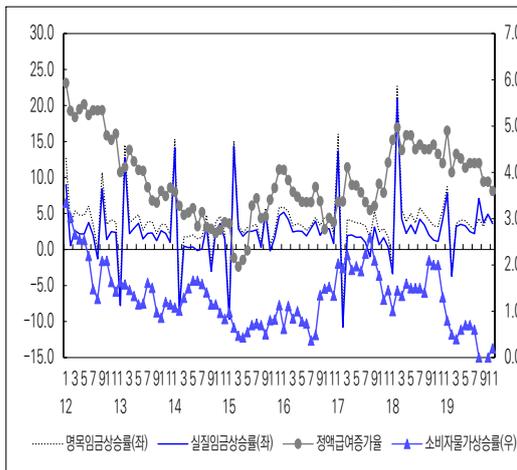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8		2019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106 ( 3.8)	3,207 ( 3.3)	3,376 ( 5.3)	3,336 ( 5.3)	3,103 ( 3.2)	3,454 ( 3.5)	3,220 ( 3.8)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331 ( 4.0)	3,418 ( 2.6)	3,592 ( 5.1)	3,547 ( 5.1)	3,293 ( 3.0)	3,400 ( 3.3)
	정액급여	2,668 ( 3.4)	2,764 ( 3.6)	2,891 ( 4.6)	2,877 ( 4.6)	2,878 ( 4.4)	2,996 ( 4.1)
	초과급여	189 ( 4.2)	190 ( 0.6)	197 ( 3.7)	196 ( 3.4)	198 ( 3.6)	202 ( 2.8)
	특별급여	475 ( 7.2)	464 (-2.2)	504 ( 8.5)	474 ( 8.4)	217 (-12.7)	464 (-2.0)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88 ( 0.6)	1,353 ( 5.1)	1,428 ( 5.5)	1,423 ( 5.5)	1,460 ( 4.9)	1,512 ( 6.2)	1,552 ( 6.3)
소비자물가지수	101.6 ( 1.0)	103.0 ( 1.9)	104.5 ( 1.5)	104.7 ( 1.5)	104.7 ( 2.0)	104.9 ( 0.3)	104.9 ( 0.2)
실질임금증가율	2.8	1.3	3.7	3.7	1.1	3.2	3.6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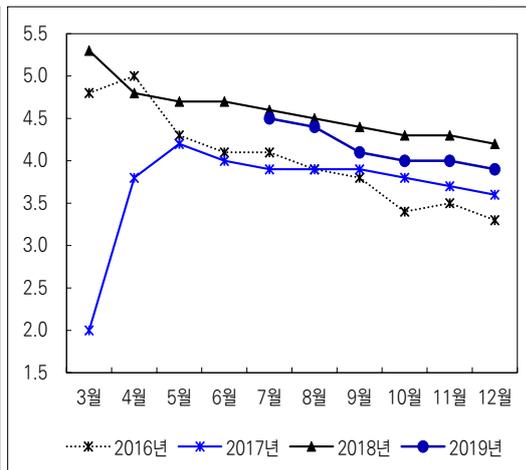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2019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 3.9%

○ 2019년 1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함.

◆ 2019년 11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상승폭 3.7%

○ 2019년 11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3.7%임.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2,97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4,527천 원으로 임금상승폭이 크게 확대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2018년 감소폭이 컸던 특별급여가 플러스로 전환한 영향이 큼.

〈표 2〉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7	2018	2018		2019	
				1~11월	11월	1~11월	11월
중소 규모	소 계	2,886 ( 4.6)	3,019( 4.6)	2,989( 4.7)	2,867( 4.4)	3,109( 4.0)	2,972( 3.7)
	상용임금총액	3,082 ( 4.0)	3,217(11.5)	3,184( 4.5)	3,046( 4.3)	3,304( 3.8)	3,148( 3.3)
	정액급여	2,602 ( 4.3)	2,723( 4.7)	2,712( 4.7)	2,718( 4.7)	2,830( 4.3)	2,823( 3.9)
	초과급여	164 ( 2.5)	172( 4.8)	171( 4.5)	172( 4.9)	175( 2.1)	175( 1.8)
	특별급여	316 ( 2.0)	322( 1.9)	301( 3.0)	157( -1.6)	300(-0.2)	150(-4.3)
	비상용임금총액	1,350 ( 5.0)	1,422( 5.3)	1,417( 5.3)	1,468( 4.9)	1,500( 5.9)	1,545( 5.3)
대규모	소 계	4,983 ( 0.5)	5,305( 6.5)	5,214( 6.0)	4,365( -2.0)	5,288( 1.4)	4,527( 3.7)
	상용임금총액	5,145 ( 0.3)	5,474( 6.4)	5,376( 5.9)	4,521( -2.1)	5,423( 0.9)	4,621( 2.2)
	정액급여	3,598 ( 2.3)	3,735( 3.8)	3,708( 3.9)	3,676( 2.8)	3,816( 2.9)	3,755( 2.1)
	초과급여	324 (-2.1)	324( 0.0)	324(-0.4)	327( -1.3)	336( 3.7)	335( 2.6)
	특별급여	1,223 (-4.5)	1,415(15.7)	1,345(13.7)	519(-27.0)	1,271(-5.5)	531( 2.4)
	비상용임금총액	1,400 ( 6.9)	1,509( 7.8)	1,510( 7.6)	1,365( 5.4)	1,697(12.4)	1,676(22.8)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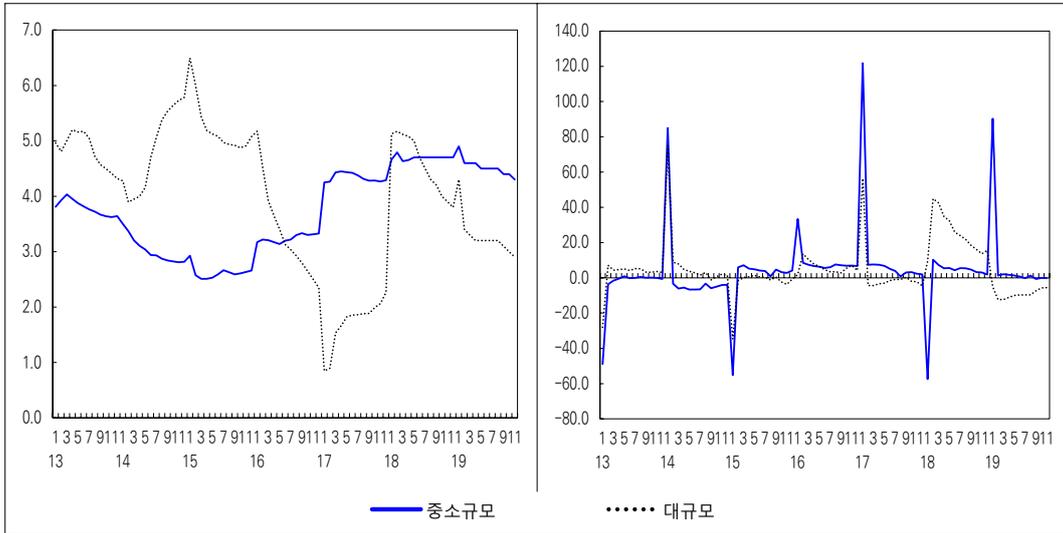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9년 1~11월 평균 중소기업 사업체는 전년동평균대비 4.0% 상승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1.4% 상승에 그침

○ 300인 이상 임금총액 증가율 둔화는 2018년에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2016~2017년분)과 차

[그림 3]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좌, 누계)과 특별급여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동차 관련 산업(2017~2018년분)의 임금협상타결금 2년치가 지급된 반면, 2019년에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2018년분)과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타결금 1년치가 지급되어 2018년에 지급된 일부 산업(1차 금속제조업 등)의 비정기 성과급이 2019년에는 지급되지 않은 데 기인함.

◆ 2019년 11월 근로자 1인당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0%)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19년 11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7.1%)이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6.7%), 하수,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6.6%) 부문도 6%대의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임.
  - 교육서비스업(2.4%), 금융 및 보험업(2.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9%)은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보였고, 제조업도 평균상승률을 하회하는 3.4%를 기록함.
  - 11월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527천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58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7	2018	2018		2019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 산업	3,207 ( 3.3)	3,376 ( 5.3)	3,336 ( 5.3)	3,103 ( 3.2)	3,454 ( 3.5)	3,220 ( 3.8)
광업	3,713 ( 1.0)	3,835 ( 3.3)	3,829 ( 3.3)	3,812 ( 3.4)	3,970 ( 3.7)	3,938 ( 3.3)
제조업	3,690 ( 2.4)	3,930 ( 6.5)	3,863 ( 6.1)	3,444 ( 1.1)	3,971 ( 2.8)	3,562 ( 3.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281 (-0.3)	6,436 ( 2.5)	6,137 ( 2.2)	5,189 ( 7.1)	6,247 ( 1.8)	5,033 (-3.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3,089 ( 3.7)	3,288 ( 6.5)	3,221 ( 5.6)	3,122 ( 4.8)	3,447 ( 7.0)	3,327 ( 6.6)
건설업	2,624 ( 4.7)	2,784 ( 6.1)	2,765 ( 6.0)	2,727 ( 5.6)	2,935 ( 6.2)	2,870 ( 5.2)
도매 및 소매업	3,049 ( 5.8)	3,214 ( 5.4)	3,177 ( 5.8)	3,015 ( 5.9)	3,326 ( 4.7)	3,153 ( 4.6)
운수업	3,156 ( 4.4)	3,357 ( 6.4)	3,315 ( 6.6)	3,006 ( 3.9)	3,430 ( 3.5)	3,122 ( 3.8)
숙박 및 음식점업	1,626 ( 3.6)	1,757 ( 8.1)	1,755 ( 8.2)	1,741 ( 7.2)	1,877 ( 7.0)	1,858 ( 6.7)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4,122 ( 3.6)	4,277 ( 3.8)	4,259 ( 4.2)	4,144 ( 3.3)	4,434 ( 4.1)	4,303 ( 3.8)
금융 및 보험업	5,706 ( 3.8)	6,026 ( 5.6)	5,933 ( 6.4)	5,377 ( 4.4)	6,141 ( 3.5)	5,527 ( 2.8)
부동산 및 임대업	2,446 ( 2.7)	2,600 ( 6.3)	2,582 ( 6.4)	2,494 ( 5.3)	2,738 ( 6.0)	2,671 ( 7.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92 ( 1.1)	4,757 ( 5.9)	4,669 ( 5.4)	4,289 ( 4.2)	4,802 ( 2.9)	4,414 ( 2.9)
사업서비스업	2,088 ( 1.9)	2,203 ( 5.5)	2,191 ( 5.6)	2,128 ( 5.0)	2,319 ( 5.8)	2,251 ( 5.8)
교육서비스업	3,316 ( 2.6)	3,397 ( 2.5)	3,402 ( 2.6)	3,096 ( 0.6)	3,477 ( 2.2)	3,170 ( 2.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71 ( 3.7)	2,799 ( 4.8)	2,784 ( 4.9)	2,742 ( 5.1)	2,946 ( 5.8)	2,884 ( 5.2)
여가관련 서비스업	2,512 ( 6.8)	2,684 ( 6.8)	2,637 ( 6.8)	2,595 ( 7.9)	2,773 ( 5.1)	2,692 ( 3.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40 ( 3.4)	2,401 ( 7.2)	2,371 ( 6.8)	2,254 ( 6.2)	2,494 ( 5.2)	2,380 ( 5.6)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9년 1~11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9년 1~11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7.0%)과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7.0%)으로 평균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한편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8%), 교육서비스업(2.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9%)은 1~2%대의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조업의 임금상승률도 2.8%로 전년동평균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함.

－ 1~11월 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6,247천 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산업은 7%의 높은 임금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1,877천 원)으로 나타남.

◆ 2019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6.4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6.9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20.4일로 전년동월대비 0.7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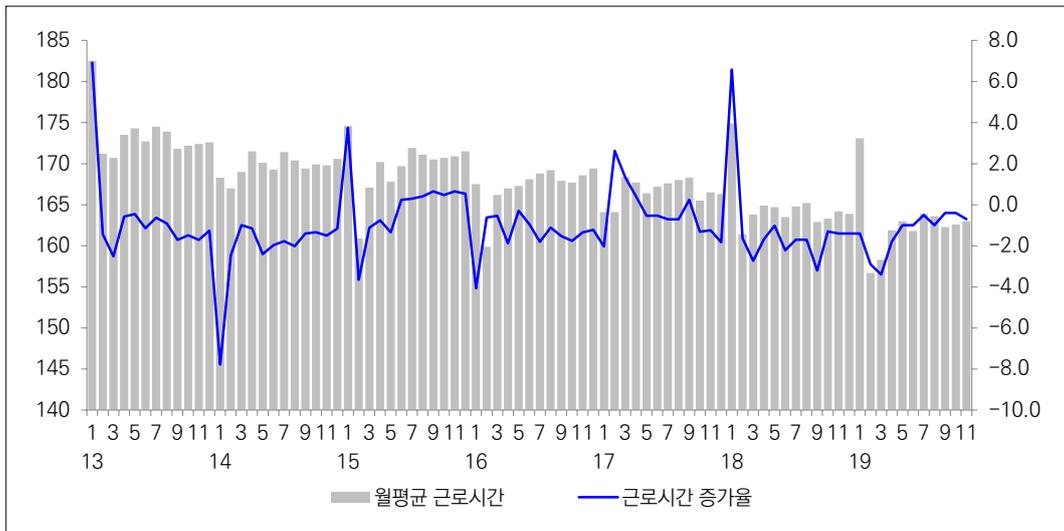
○ 2019년 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66.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90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0시간 감소, 비상용(임시·일용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7.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0시간 감소함. 비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1~11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3.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 19.9일로 전년동평균대비 0.1일 감소)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누계평균) 추이

(단위 : 시간, %)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9년 11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평균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19년 11월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66.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2시간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는 167.8시간으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5.5시간 감소함.

〈표 4〉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7	2018	2018		2019	
				1~11월	11월	1~11월	11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6.6 (-1.9)	164.1(-1.5)	164.3(-1.5)	173.3(-1.7)	162.8(-0.9)	166.1(-4.2)
	상용 총근로시간	174.4 (-2.2)	172.1(-1.3)	172.3(-1.3)	182.6(-1.5)	171.0(-0.8)	174.7(-4.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4.7 (-2.1)	163(-1.0)	163.2(-1.0)	173.5(-1.3)	162.3(-0.6)	166.2(-4.2)
	상용 초과근로시간	9.7 (-4.0)	9.1(-6.2)	9.1(-6.2)	9.0(-6.3)	8.6(-5.5)	8.5(-5.6)
	비상용근로시간	105.7 (-2.7)	99.2(-6.1)	99.5(-6.0)	100.7(-5.3)	95.4(-4.1)	96.6(-4.1)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4 (-1.5)	163.3(-0.7)	163.6(-0.7)	173.3(-1.1)	164.0 (0.2)	167.8(-3.2)
	상용 총근로시간	167.7 (-1.8)	166.6(-0.7)	166.9(-0.7)	177.9(-1.2)	166.3(-0.4)	169.5(-4.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5.4 (-1.0)	154.9(-0.3)	155.2(-0.3)	166.5(-0.7)	154.9(-0.2)	158.5(-4.8)
	상용 초과근로시간	12.3(-10.2)	11.7(-4.9)	11.7(-5.6)	11.4(-6.6)	11.4(-2.6)	11.0(-3.5)
	비상용근로시간	90.3( 5.6)	89.2(-1.2)	90.0(-1.6)	84.8( 1.9)	104.4(16.0)	115.0(35.6)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9년 1~11월 평균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은 162.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시간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는 164.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증가함.

◆ 2019년 11월 기준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모든 산업에서 감소

○ 2019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138.2시간, -5.2%)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운수업(-4.5%), 교육서비스업(-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4%), 제조업(-4.1%) 순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함.
- 11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181.5시간)이었으며,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8.2시간)이었음.

○ 2019년 1~11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하수·폐기물 처리, 출판·영상 등,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감소함.

- 전년동평균 대비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여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6.1시간, -1.9%)이었으며,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하수·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178.3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7	2018	2018		2019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 산업	166.3(-1.8)	163.9(-1.4)	164.2(-1.4)	173.3(-1.6)	163.0(-0.7)	166.4(-4.0)
광업	175.8(-1.2)	176.6( 0.5)	176.6( 0.6)	187.7( 2.2)	175.3(-0.7)	179.3(-4.5)
제조업	179.8(-1.8)	177.1(-1.5)	177.4(-1.5)	188.3(-1.8)	175.7(-1.0)	180.5(-4.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64.9(-1.7)	162.1(-1.7)	162.1(-1.6)	176.8(-2.5)	160.6(-0.9)	173.6(-1.8)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1( 0.0)	177.8( 0.4)	177.9( 0.5)	186.2(-0.3)	178.3( 0.2)	181.5(-2.5)
건설업	141.9(-0.1)	138.5(-2.4)	138.7(-2.4)	145.8(-0.9)	136.1(-1.9)	138.2(-5.2)
도매 및 소매업	167.6(-1.5)	165.2(-1.4)	165.4(-1.4)	175.2(-1.4)	165.3(-0.1)	169.5(-3.3)
운수업	169.2(-2.1)	166.5(-1.6)	166.8(-1.5)	173.6(-1.6)	164.1(-1.6)	165.8(-4.5)
숙박 및 음식점업	160.4(-3.2)	159.7(-0.4)	159.7(-0.5)	164.3(-1.0)	158.8(-0.6)	161.5(-1.7)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0.9(-1.2)	161.6( 0.4)	162.0( 0.5)	174.6( 0.6)	163.8( 1.1)	167.2(-4.2)
금융 및 보험업	160.5(-1.5)	160.9( 0.2)	161.3( 0.2)	171.5(-0.3)	161.4( 0.1)	164.0(-4.4)
부동산 및 임대업	184.9(-2.2)	178.9(-3.2)	179.1(-3.2)	185.9(-3.9)	176.2(-1.6)	178.6(-3.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1(-1.7)	160.4( 0.2)	160.8( 0.2)	173.7( 0.3)	161.2( 0.2)	166.1(-4.4)
사업서비스업	165.1(-3.0)	163.2(-1.2)	163.4(-1.1)	171.5(-2.1)	162.4(-0.6)	165.3(-3.6)
교육서비스업	144.4(-2.1)	142.3(-1.5)	142.8(-1.4)	150.1(-1.6)	142.2(-0.4)	143.4(-4.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4.5(-2.2)	162.5(-1.2)	162.7(-1.3)	172.0(-1.7)	161.9(-0.5)	165.2(-4.0)
여가관련 서비스업	159.5(-0.4)	157.7(-1.1)	157.9(-1.0)	165.0(-2.1)	156.1(-1.1)	160.1(-3.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4.2(-2.0)	162.0(-1.3)	162.1(-1.3)	169.5(-1.3)	159.8(-1.4)	161.9(-4.5)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0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102건
  - 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건수(104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2020년 1월 조정성립률 56.5%
  - 1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58.0%에 비해 1.5%p 낮아진 수치임.

〈표 1〉 2019년, 2020년 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0. 1	102	71	35	11	24	27	2	25	0	9	31	56.5
2019. 1	104	80	40	13	27	29	3	26	2	9	24	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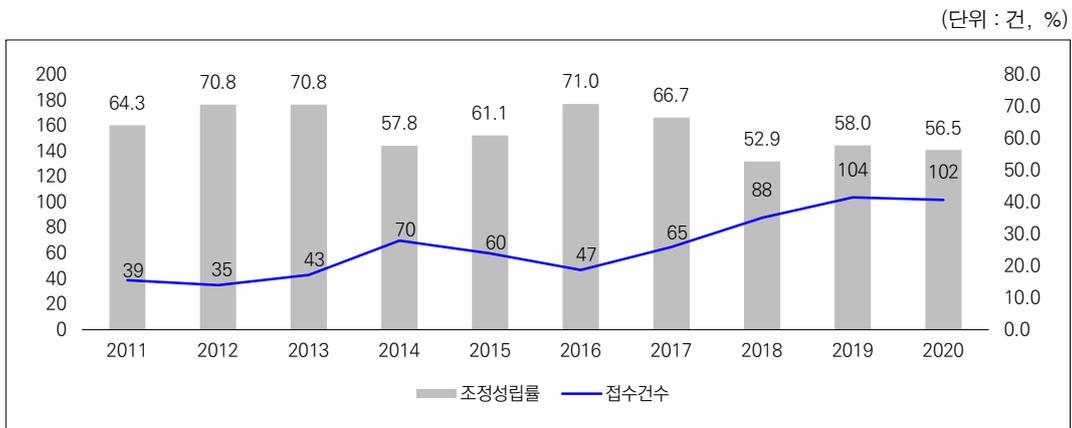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표 2〉 2011~2020년 1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1. 1	2012. 1	2013. 1	2014. 1	2015. 1	2016. 1	2017. 1	2018. 1	2019. 1	2020. 1
접수건수	39	35	43	70	60	47	65	88	104	102
조정성립률	64.3	70.8	70.8	57.8	61.1	71.0	66.7	52.9	58.0	56.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1~2020년 1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 심판사건

- 2020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3,402건
  - 1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3,152건)보다 250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1.1%(143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8.9%(1,150건)를 차지함.

〈표 3〉 2019년, 2020년 1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0. 1	3,402	1,293	132	11	274	72	477	327	2,109
2019. 1	3,152	1,162	131	17	196	80	446	292	1,99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0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117건
  - 1월 복수노조사건<sup>1)</sup>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69건)보다 48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51.6%(32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48.4%(30건)를 차지함.

〈표 4〉 2019년, 2020년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0. 1	117	62	32	0	14	3	13	0	55
2019. 1	69	46	18	1	4	1	22	0	2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삼성화재 창립 68년 만에 노조결성

- 2월 3일 한국노총에서 노조 출범식
  - 2월 3일 삼성화재노조는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

1) 복수노조 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노조는 2019년 12월 8일 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2020년 1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남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하였고 상급단체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 하였음.
- 한국노총은 “삼성화재 노동자들은 그동안 사측의 일방통행식 경영과 인격 무시, 부당한 인사발령·급여·승진체계, 불합리한 목표 아래 진행되는 각종 차별대우와 무리하고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았다”며 “대외적으로 윤리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안에서는 견제 없는 인사권을 갖고 약자인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통제했다”고 비판함.
- 삼성화재노조 설립으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중 노조가 있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삼성화재에너지손해사정까지 4곳이 되었음.

◆ 삼성화재에너지손해사정노조, 노조 할 권리 보장합의

- 삼성화재에너지손해사정노사 2020년 단체협약 조인식
  - 2월 5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에너지손해사정노동조합과 삼성화재에너지손해사정주식회사는 삼성화재에너지손해사정주식회사 본사에서 2020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음.
  - 삼성화재에너지손해사정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3,800시간 ▲노조 사무실 및 집기 제공 ▲노조 홍보활동 보장 ▲노조활동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 금지 ▲취업규칙 명문화 및 신설조항 삽입 등이 포함됨.
  -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노조는 이달 중 회사와 임금협상에 돌입할 예정임.

◆ 김동명·이동호,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사무총장 당선

- 현장중심 노동운동으로 제1노총 지위 회복
  - 1월 21일 2020 한국노총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총 3,336명의 선거인단 중 3,128명이 투표한 가운데 1,580명(50.5%)의 지지를 얻어 한국노총 제27대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김동명(현 화학노련 위원장)·이동호(현 우정노조 위원장) 후보조가 당선되었음.
  - 김동명·이동호 후보조는 선거기간 중 ‘제1노총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고 주요공약으로는 ▲제1노총 지위 회복·비상체제 운영 ▲50인 활동가 채용 ▲전국단위 한국노총 일반노조 설립 ▲현장 의견 수렴 강화 위한 선거인·대의원 수 2배 확대 ▲파탄난 정책협약 즉각 재검토 및 새로운 정치방침 결정 등을 제시하였음.
  - 한국노총 차기임원으로 당선된 김동명·이동호 당선인의 임기는 1월 28일부터 시작함.

### ◆ 국내 8개 조종사 노조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결성

#### ○ 항공정책 선진화 요구

-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이하 조종사 연맹)은 1월 30일 조종사 연맹 창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음.
- 연맹 창립에 동참한 노조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 ▲아시아나 열린조종사 노동조합 ▲에어부산 조종사 노동조합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진에어 노동조합 등임.
- 조종사 연맹은 8개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 중 한태웅 에어부산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상모 진에어 노동조합 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선출하였음.
-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과거 양대 항공사가 독과점 하던 시절에 결정된 항공운송산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조종사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음.
- 또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해제하고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에 맞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

### ◆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자회사' 거부 전면파업

#### ○ 2017년부터 노사전문가 협의회 15차례, 집중회의 5차례를 열어 정규직 전환문제를 논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는 1월 28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며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음.
-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은 소방, 특수경비, 미화, 시설, 전산 등의 업무를 맡은 용역·파견노동자들로 약 1,200여 명에 이룸.
-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노사전문가 협의회 15차례, 집중회의 5차례를 열어 정규직 전환문제를 논의하였음.
- 노측은 사측이 자회사 전환만을 요구하고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엔 ‘고령자 친화 직종’으로 정부가 정년을 65살로 정하라고 권고한 미화, 시설 노동자의 정년을 60살로 하겠다고 해 150여 명이 해고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이날 본사 비정규직지부의 전면파업은 1월 2일과 13일 부분 파업에서 이어진 것으로, 노조 측은 노사 협의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 14개 지역본부의 조합원도 추가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화 ‘한전 자회사’ 합의

- 노·사·전문가 협의체 “자유총연맹이 가진 지분 31% 전량을 한국전력·발전 5사가 매입하라고 주문”
  - 2월 4일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발전 5사 통합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한전산업개발을 활용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과 한전산업개발이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정부 및 자유총연맹과 한전 등에 발송하였음.
  - 한국전력과 발전 5사가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입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조임.
  - 현재 한전산업개발 최대 주주는 지분 31%를 가진 한국자유총연맹이고,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 자회사였다가 2003년 민영화되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을 가지고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노·사·전 협의체는 자유총연맹이 가진 지분 31% 전량을 한국전력·발전 5사가 매입하라고 주문하였음.

◆ 배민 라이더 수수료 삭감 방침에 노조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

- 사측, 2월부터 ‘프로모션 수수료’ 폐지
  - 음식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배민)은 2월 1일부터 당일 주문 수·라이더 수 등을 고려해 추가로 지급해 온 프로모션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배달료 개편안을 1월 22일 공지하였음.
  - 이는 기본 수수료 3,000원에 ‘거리할증’(1.5km 초과할 경우 500m당 추가) 등만 더해 배달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앞서 배민은 프로모션 수수료의 책정 근거가 되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날마다 일방적으로 변경해 비판을 샀음.
  - 노조는 배민의 일방적 배달료 체계 변경이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였고, 배민이 도입한 ‘라이더 배송대행 기본계약서’의 배달수수료 조항을 보면, “‘갑(배민)’이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을(라이더)’에게 30일 전 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라이더앱 또는 문자메시지(LMS) 등으로 사전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새 배달료 체계를 발표한 것은 배민 스스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반발을 하였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는 입장문을 내어 “(건당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 라이더들은 제한된 시간 내 더 많은 배달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였음.

#### ◆ 변호사업계 사상 첫 ‘변호사 파업’

- 법률구조공단 소속 83명 인력충원 등 입장 차 못 좁혀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2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은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이번 파업에 참여한 변호사는 총 83명으로 이 가운데 41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42명은 근로 거부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하였음.
  - 변호사 노조는 ▲변호사 인력 충원 및 과도한 업무량 제한 ▲노조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원상회복 ▲변호사 중심의 공단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공단은 ▲인력충원을 위해 협조하고 있고 ▲공단 경영은 경영진의 운영철학에 맡길 문제이며 ▲수용 가능한 요구에 대한 대화 및 노력을 개진하고 있음에도 파업이 강행돼 아쉽다는 입장임.
  - 변호사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단 업무가 급증하는 3월까지 파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임.

#### ◆ 일하다 폐암 걸린 환경미화 노동자 4명 산재 인정

- 근로복지공단 1월 업무상재해 인정... 2명은 최근 투병 중 사망
  - 지난 1월 근로복지공단은 순천시청(2명)·함평군청·대전 중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송씨·백씨(2017년 사망)·이씨·유씨 등 4명의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음.
  - 산재로 승인된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10년 이상 거리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렸으며, 길게는 24년간 일한 사람도 있었음.
  - 이들은 2019년 2월 공단 각 지역지사에 산재승인을 요청, 공단은 이들이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고, 유리규산이나 석면에 간헐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음.
  - 산재승인 요청 1년 만에 승인은 됐지만, 2019년 말 유씨가 투병 중 숨졌고, 2월 3일에는 송씨가 투병 중 숨졌음.

◆ “KTX 승무원 ‘하지정맥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첫 인정

○ 승무원의 업무환경과 복장, 자세 등을 요인으로 인정

- 근로복지공단은 1월 13일 KTX 승무원인 김씨(31)의 요양급여신청 사건에서 하지정맥류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음.
- 김씨는 2012년 7월 16일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했고, 2016년 4월부터 종아리 뒤쪽에 앞쪽으로 쪼는 듯한 통증이 시작됨.
- 쉬는 날 휴식을 취해도 다리 통증이 지속됐고 같은 해 8월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관정을 받았음. 이후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수술을 받은 뒤 일터로 복귀했으나 2018년 10월 하지정맥류가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음.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는 업무상질병판정서에서 “김씨는 이동 중인 열차의 흔들림으로 서서 근무 시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한 점, 고객 눈높이에 맞춘 고객 응대로 다리에 힘이 주어지는 자세가 발생한 점, 열차 내 승무원 휴게공간이 부족해 통로에서 서서 휴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근무한 점, 발병 당시 착용한 신발 굽 높이가 4.5cm로 다리 부위에 부담이 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하지정맥류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음.

◆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68.5%로 발표

○ 취업전담조직 운영, 대체인력지원금 등에 효과

- 근로복지공단은 2월 2일 2019년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직전 연도보다 3.2%포인트 증가한 68.5%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은 2017년 63.5%, 2018년 65.3%에 이어 2019년에도 68.5%로 나타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대해 공단은 산재노동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및 취업전담조직인 재활지원팀을 운영한 것이 유효했다고 설명하였음.
- 공단은 현재 산재노동자가 치료 후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재활인증병원을 통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산재관리의사가 직업복귀를 위한 전 과정에 개입해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공단의 취업전담조직 권역별 재활지원팀이 직업훈련, 취업설명회, 취업성공패키지 및 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있음.

◆ 남성 육아휴직 사상 최고

○ 3월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2019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 휴직자가 2018년(1만 7,665명)보다 26.2% 증가한 2만 2,29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은 것은 2001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임.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1.2%로 처음으로 20%를 넘겼으며, 기업 규모별로 보면 절반 이상인 56.1%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음.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사용자 또한 2017년 4,409명에서 2019년 9,796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3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됨.
- 이날 발표된 육아휴직자 수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됨.

〈표 5〉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추이

(단위 : 명)

	추진 실적	
	인원	남성
2009	35,400	502
2011	58,132	1,403
2013	69,591	2,293
2015	87,323	4,871
2017	90,108	12,042
2018	99,198	17,665
2019	105,165	22,297

자료 : 고용노동부.

◆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으로 경기도 청년 행복감 상대적으로 높아

○ 대상자의 65.4%가 “청년기본소득으로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

- 2월 2일 경기연구원은 2019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중 3만 2,687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수령 전후를 비교한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경기도 외 지역 만 24세 청년 900명과 이번 패널조사 대상자의 행복감,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꿈-자본, 경제활동 범주를 비교했더니 청년기본소득 수급자의 긍정적 반응

이 있었음.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은 2019년 4월 시작되었고,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음. 2019년 수급자는 17만 5,281명임.
- 100점 만점으로 ‘행복감 정도’는 비교집단(59.0점)에 비해 수급자가 63.5점으로 높았고, 건강상태는 비교집단(49.7점)에 비해 수급자(53.5점)가 높았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느낀다”는 문항에도 수급자(62.0점)가 비교집단(56.1점)보다 긍정적으로 답했음.
- 또한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으며, 이는 7월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만족도는 82.7%로 1차 조사에 비해 2.1% 상승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65.4%가 “청년기본소득으로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 1차 조사 결과인 60.3%보다 5.1%포인트 증가한 수치며, 삶의 변화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었다”거나 “자기계발 시도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 권한·책임 강화된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공개

##### ○ 실질적 노동자 목소리 반영으로 노동자 경영참여 독려

- 서울시는 2월 3일 노동자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한 단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2.0’을 공개했음.
- ‘노동자이사제 2.0’의 주요골자는 크게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노동자이사제의 권한·책임 강화 ▲노동자이사의 활동 및 역량강화 ▲서울형 노동자이사제의 전국 및 아시아 확산 유도로 집약됨.
- 세부내용으로는 국내 노동자이사 네트워크의 중심점 역할을 할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이사회와 노·사 대표,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기로 함.
- 현재 이사회에 올라온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만 있다면, 앞으로는 기관 내 부서를 통해 이사회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안전 제출권)과 이사회 안전·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정보 열람권)을 새롭게 부여하기로 함.
-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평등과 같이 노동자의 역할과 정합성이 있는 직무에 현직 노동자이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관련 법규, 갈등조정, 이사회 운영기준 등 역할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한 타 시·도의 노동자이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노동

자이사 총회'를 구성·운영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에 입법 건의할 예정임.

#### ◆ 부산형 상생일자리 10년간 4,300명 직접고용

○ 르노삼성자동차 이후 부산서 역대 최대 규모 7,600억 원 투자

- 부산시는 2020년 2월 6일 문재인 대통령과 4개 부처 장관, 지역·노·사·민·정 대표, 자동차부품 업체인 코렌스 EM과 협력업체 노사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열었음.
- 부산형 일자리는 원·하청 기업이 글로벌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을 공동개발 해 동반 성장을 꾀하는 기술 상생 모델임.
- 코렌스와 협력업체 20여 개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신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원·하청 기업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 미래차 부품 제조 허브를 조성함.
- 협력업체 20개사가 코렌스와 같이 입주하면 2031년까지 전기차 부품 클러스터는 30만<sup>2</sup>로 확대되고, 투자금액은 7,600억 원으로, 직접고용인원은 4,300명으로 늘어남.
- 원청기업인 코렌스는 2020년부터 3년간 국제산업물류도시 10만<sup>2</sup>에 2,082억 원을 투자, 605명을 고용해 전기차 핵심부품 제조공장과 연구시설을 짓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파워트레인 400만 대를 생산, 완성차 업체에 수출할 예정임.

#### ◆ ‘타다 콜택시 영업’ 이재웅 대표, 1심 무죄

○ 재판부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타다’로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를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음.
- 검찰 측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 운전자를 알선하거나 유상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타다가 어겼다고 보고 이대표 등을 기소하였고,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들어 합법이라고 주장하였음.
- 재판부는 타다가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고 이용자가 타다 앱을 통해 서비스 기사가 포함된 승합차 대여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예약 서비스 입력을 확인함으로써 쏘카와의 이용계약이 체결된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재판부는 “(금지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

- 택시 운행뿐만 아니라 타다와 같이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유추해석해 죄형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번 판단으로 택시 등 교통수단,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 규제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